민사법률행위의 분류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민사법률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현행민 법실천에서 제기되는 민사관련문제들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해결하기 위 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옳바로 분류하여야 개별적인 민사법률행위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민사법률행위의 법적효력과 효과에 관한 문제들을 원만히 규제 할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모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여 분류할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무엇보다먼저 해당 행위수행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일방적 법률행위와 쌍방적법률행위, 다방적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일방적법률행위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행위가 민사법률행위로서의 법적효력을 발생 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다시말하여 일방적법률행위는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 자는 물론 상대방당사자에게도 그에 해당한 민사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 는 법률행위이다.

상대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여부에는 관계없이 순수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해당한 민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는데 일방적법률행위의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들어선자는 자기의 일방적의 사표시로써 그것을 거절할수 있다.

일방적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이 미리 정한 사유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법률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유언이나 상속권의 포기, 대리권의 취소와 같은 행위들이 속한다.

행위자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들어선자는 그로 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허물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 행위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실례로 본인의 대리권취소로 하여 대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대리인의 허물에 기초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보상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민사법률관계의 일반원리에 기초한것이다.

쌍방적법률행위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정해진 다른 한 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해당한 법적효력을 일으키는 민사법률행위이다. 다시말하여 쌍방적법률행위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제의)에 대한 다른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동의)에 기초하여 그에 해당한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일정한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상대방당사자의 동 의의사에 의하여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는데 쌍방적법률행위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쌍방적법률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민사법률관계의 광 범한 령역에서 진행되고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당사자들의 합의(실례로 다방적법률행위) 를 이룩하는것보다 하나의 당사자를 대방으로 선정하여 합의보는것이 민사관계에서 보다 용 의하고 편리하기때문이다.

다방적법률행위는 둘이상의 당사자들이 하나의 법적결과를 목적하여 이룩하는 합의를 말한다.

법률행위당사자들이 다수인것으로 하여 다방적법률행위에서는 하나의 법적효과를 지향하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에서도 쌍방적법률행위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복잡성을 띠게 된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다방적법률행위는 그것이 해당 행위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에 한해서만 활용되게 된다.

실례로 법인의 설립시 규약채택행위나 하나의 건설물을 놓고 여러 당사자(시공주)들이 맺는 합동작업계약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다방적법률행위도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어긴자에게는 법적책임이 가해지게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의 법적효력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에 예견된 해당 행위까지 리행되여야 발생하는가에 따라 합의적인 법률행위와 리행적인 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합의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을 일으키는 민사법률행위이다.

합의적인 민사법률행위에서는 당사자들사이의 현실적인 행위수행에는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합치만을 그의 설정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합의적인 민사법률행위에서는 당사자들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합의적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실례로서 팔고사기계약을 들수 있다.

리행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함께 의사표시에서 지적된 행위까지 상대방 앞에 리행하여야 그 효력이 성립되는 행위이다.

리행적인 법률행위는 합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보다도 그에 따르는 행위수행결과에 근거하여 해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데 특성이 있다.

실례로 꾸기계약이나 보관계약과 같은 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함께 꾸어 주는 돈이나 보관시키는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에 대한 형식적요구에서 당사자들의 임의성을 허용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임의적인 형식행위와 특정화된 형식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임의적인 형식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을 일반적인 범위(말 또는 서면)로 한정하고 그에 대한 선택의 여지(임의성)를 당사자들에게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와는 달리 특정화된 형식행위는 그의 개별적인 형식이 법에 직접 지적된 행위로서 그에 대한 형식적요구에서 당사자들의 임의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화된 형식행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거래관계의 당 사자나 그 내용의 중요성, 복잡성, 기간의 장기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여 법이 직접 정한다.

실례로 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호상간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 민들사이에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형식을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제품공급계약이나 기본건설시공계약, 짐수송계약 등 기관, 기업소, 단체들호상간의 계약과 보험계약을 비롯한 공민과 국가기관사이의 계약은 반드시 일정한 서면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법이 정한 이와 같은 의무적인 서면형식을 지키지 않은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의 호상련관성에 따라 주되는 법률행위와 종속되는 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이것은 호상 련관된 두개의 민사법률행위가 각기 독립적인 행위로 존재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정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호상 련관된 두개의 민사법률행위가운데서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주되는 법률행위이며 반드시 주되는 법률행위와의 련관속에서만 설정가능한 법률행위가 종속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호상련관성으로부터 종속되는 행위는 주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그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되게 된다. 실례로 일정한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전당권설정 행위는 돈을 꾸는 행위(주되는 법률행위)에 종속되는 행위로서 상쇄나 그밖의 리유로 꾸어 준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해당한 전당권도 소멸되게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해당 행위가 채권채무관계의 설정에 지향되는가 아니면 물 적재산권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채권적행위와 물적재산권적인 행위 로 분류할수 있다.

채권적법률행위는 물적재산권의 변동상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당 사자들사이에 그와 관련한 채권 또는 채무만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실례로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줄것을 요구할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 혹은 대금지불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들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체결행위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물적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전제로는 될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물적재산권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채권적인 행위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채권적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례외적으로 일방적행위(실례로 유언행위, 무상증여행위, 부당리득행위, 무임재산관리행위 등)에 기초하여서도 이루어질수도 있다.

여기에서 류의할 문제는 모든 채권적행위가 다 물적재산권의 변동을 동반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실례로 팔고사기계약이나 전당권설정계약과 같이 특정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채권 적행위는 그 결과가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나 점유권이전과 같은 물적재산권적인 행위로 이어지지만 꾸어주기계약과 같이 종류물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적행위는 구체적인 대 상에 대한 물적재산권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순수한 채권적행위로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적행위는 그 대상에 따라 그것이 물적재산권적인 행위로 이어질수도 있다. 물적재산권적인 행위는 물적재산권의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다 시말하여 일정한 특정물과 관련된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물적재산권적인 행위는 그자체로 이루어지는 경우(실례로 법에 기초한 국가소 유권의 발생)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채권적행위의 리행결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실례로 팔고사기계약의 체결은 판매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길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에 국한되지만 그 리행으로서 수행되는 소유권이전행위는 물적재 산권적인 행위로 된다.

물적재산권적인 행위에는 소유권의 이전이외에도 점유권이나 리용권, 경영상관리권 등 물적재산권들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들이 모두 속한다. 공화국민법은 한개의 물건(특정물)에 두개의 동일한 물적재산권이 동시에 설정될수 없다는 원칙(일물일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물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성격을 인정하고있다. 이로부터 한개의 물건(특정물)에 두개의 동일한 물적재산권이 주장되는 경우 법은 먼저 설정된자의 물적재산권적보호에 우선적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후에 설정된자의 물적재산권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물적재산권의 우선적효력은 한개의 특정물에 대하여 물적재산권과 채권이 동시에 설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되게 된다. 즉 한개의 특정물에 대한 물적재산권과 채권이 동 시에 주장되는 경우 법은 채권적권리의 보호에는 관계없이 물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우선적 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해당 행위의 인과관계가 법적인 효력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사법률행위는 그의 법적효력, 효과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목 적의사)를 기본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유인행위는 해당 법률행위의 원인으로 되는 당사자의 목적의사가 그 결과에 대한 법 적효력의 인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다.

이로부터 행위자의 의사표시에 위법적인 요소(실례로 밀수, 밀매)가 있거나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이러저러한 사유(실례로 본질적착오, 사기, 강요 등)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행위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수 있는 근거로 되게 된다.

무인행위는 해당 행위의 원인으로 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그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위이다.

유인행위와는 달리 무인행위는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인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그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즉 해당 행위의 원인(당사자의 의사)과는 별도로 존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무인행위에서는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결과발생을 더 중요시하며 그에 기초한 법적효력을 직접 일으키게 된다.

무인행위의 대표적인 실례로 증권발행행위를 들수 있다.

증권발행을 기본원인으로 하는 무기명증권에 대하여서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당사자의 의사가 다른 당사자의 증권소지사실에 대한 법적효력과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말하여 증권상의 행위들은 해당 증권을 발행한자나 선행권리자의 의사(원인)에는 관계없이 그 증권을 소지하고있는 사실(결과)에 직접 법적효력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상의 행위들은 그것을 접수하거나 제시하는 당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기초적인 원인의 적법성여부를 따지거나 설명할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증권의 소지상태와 형식적측면의 정확성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효력이 인정되게 된다.

이밖에도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수행결과에 대한 대가보상의 유무에 따라 유상적법률행위 무상적법률행위 그리고 그의 법적효력이 행위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가 아닌가에따라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등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법률행위의 분류에 관한 문제는 현시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들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그의 법적효력과 효과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법률적문제이다.